

##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심 사 보 고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1. 31. 김성인 의원외 3

나. 회부일자 : 2001. 2. 3

다. 상정일자 : 2001. 2. 3

(제91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#### 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

##### 나. 개정사유

-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의 융자액을 상향 조정하고 포괄적인 융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며, 연대보증 제도 개선, 자금의 운영관리 사항을 지도감독, 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함.

##### 다. 주요내용

###### ○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융자대상 확대

- 농, 림, 축, 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, 유통판매사업.
- 지역특산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 및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
- 농지구입 자금대상자의 시가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
- 풍수해 등 농림수산관련 복구사업
- 기타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

###### ○ 융자금 한도 상향 조정

- 개인은 1인당 2,000만원이내 → 3,000만원 이내
- 단체는 1단체 당 5,000만원 → 6,000만원 이내

###### ○ 융자금의 연체이율 조정

-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→ 도농어촌 진흥기금 연체율에 준한다.

○ 연대 보증 방법 개선

- 융자 연대보증은 농림수산업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며 대출자격 등에 제한사유가 있을 시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2인 이상의 연대보증

○ 소속공무원은 연1회 이상 지도감독 의무 신설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근성)

-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### 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### 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### 7. 첨 부 :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융자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.

1.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, 유통판매사업
2. 지역특산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
3.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
4. 농지구입 자금대상자의 시가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
5. 풍수해 등 농림수산관련 복구사업
6. 기타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융자금)①융자금은 개인은 1인당 3,000만원 이내, 단체는 1단체당 6,000만원 이내로 하되, 총사업비의 70%를 초과할 수 없다.

②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4%로 하고, 연체이자율은 도 농수산업진흥기금 이자율에 준한다.

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전항의 융자신청서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여야 하며 단, 대출자격 등에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. 이때 보증인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한 세액이 연간 20,000 원 이상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.

제12조 “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소속 공무원은 년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